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816
----------	-----

2023. 07. 03.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3. 5. 30. 이민석 의원 발의 (2023. 6. 5.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등이 명기되지 않고 보고 체계가 없어 구청장의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가 미흡함.
- 이에 조합장은 조합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합장은 조합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매 반기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제도화하여 미해산(청산) 조합의

효율적 관리 도모(안 제86조제2항)

- 나. 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정기적 보고 체계 마련(안 제62조제3항)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조례안은 조합 해산(청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23년 5월 30일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자료 제출자 (안 제86조제1항)	추진위원장,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장, <b>청산인</b>
자료의 제출 기한 (안 제86조제2항)	< 신 설 >	조합 해산(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 조합장(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 6개월마다 제출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기한 (안 제62조제3항)	< 신 설 >	조합 해산(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 구청장이 시장에게 / 매 반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

- 먼저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86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sup>1)</sup> 구체적인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합 해산(청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시장 또는 구청장은 미해산(미청산) 조합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sup>2)</sup>에서 조합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기에 행정법(도시정비법) 체계가 아닌 민사법이 적용되어 조합 해산(청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집행기관(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미해산(미청산) 조합은 총 18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은 35개소로서 전체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미해산(미청산)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공하자, 조합임원 채권·채무·횡령 등의 소송, 공사비 등 조합·조합원·시공사간 분쟁에 따른 해산지연과, ▲조합임원 사망·이전, 임원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한 정상적인 해산업무 불가 등 추진주체의 부재에 있음.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사·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법 제86조<sup>2)</sup>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미해산(미청산) 조합 현황 >

(2023.4.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 ~ 15년	15 ~ 20년	20년 이상
합계 (비율)	189 (100%)	30 (16%)	65 (34%)	25 (13%)	34 (18%)	18 (10%)	8 (4%)	9 (5%)
미해산	52	9	10	2	11	7	4	9
미청산	137	21	55	23	23	11	4	-

※ 출처: 주택정책실 내부자료

- 이처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조합임원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면서 고의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sup>3)</sup>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국회에서는 2022년 6월 도시정비법을 개정<sup>4)</sup>하여 조합 해산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였음.
- 개정된 법률<sup>5)</sup>에 따르면,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유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1년이라는 기한에 맞추어 불완전한 상태로 성급히 조합을 해산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112170, 천준호의원안) p.33

4)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조합해산을 위해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세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조례상 미해산(미청산) 실태점검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sup>6)</sup>, ▲현황조사 및 보고체계가 불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민법에 의한 소극적 관리·감독<sup>7)</sup>으로는 미해산(미청산) 조합의 증가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6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신설되는 안 제86조제2항에서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토록 하며, ▲안 제62조제3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는데, 이는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정기적인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이 효율적으로 조합의 실태점검 및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sup>8)</sup>.
- 참고로, 집행기관은 민법 적용에 따른 민사적 관리가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민법의 규정을 행정법(도시정비법)에 편입하여 조합 해산(청산)에

6) 조합 점검 불응

예) 0000재건축사업조합: 도시정비법 미적용을 주장('03.6.30.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계획 승인)하며, (전)조합임원 소송 중, 조합장 직무대행 건강 문제 등 사유로 실태점검에 불응한 사례

7) 「민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

8) 일본 도시재개발법의 경우, 해산(청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민법 적용 배제)

관한 관리·감독 판단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요약됨.

<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안) >

■ 조합 해산(청산) 세부 규정 마련(안)

○ 도시정비법 신설 (제86조의3 ~ 제86조의13, 제113조 제4항)

- 조합의 사업시행부터 이전고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에 세부 근거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조합 해산·청산에 관하여 민법에서 행정법(도시정비법) 체계로 전환하여 법적 일원화 도모
- 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에게도 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청의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 마련

○ 도시정비법 개정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시 조합 해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해산에 따른 청산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청산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민원 등의 사전 예방

※ 출처: 주택정책실 내부자료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조합 해산(청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현재 상위법에서는 조합 해산(청산)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도시정비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공공지원 규정을 근거로 조례

를 개정하여 조합 해산(청산)을 조기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조합 해산에 대한 관리·감독 판단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입 법 조 사 관 한승윤	02-2180-8207
입 법 조 사 관 최지현	02-2180-8216

[붙임1] 도시정비법 신설규정(조합해산 관련)(p.8)

[붙임2] 관련법령(p.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시기, 협의 대상·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사하게 하려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 3.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
-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신고수리)
-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 6.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 4.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 결과 내용
- ③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30>

1.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해당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삭제 <2023.3.27.>

제86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고시문 사본
2. 조례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3. 조례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4. 조례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사본
  - 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 다. 사업시행계획인가서(별지 제23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별지 제22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5. 조례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

기(별지 제28호서식) 사본

다.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33호서식)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별지 제35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6. 조례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  
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

7. 조례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 :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